영등포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 용 범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崔光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59호로 2017년 8월 24일 김용범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의회운영 관련 규정들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 및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원칙 규정 (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의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안 제9조)

- 등록, 의석배정, 선서, 의원의 청가 및 결석 등

다. 의회의 기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안 제16조)

- 의장·부의장의 선거, 의장·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임시의장의 선거, 의장의 겸직 제한 등

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 안 제24조)

- 연간 회의 총일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회기,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안건처리 등

마.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5조 ~ 안 제35조)

-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 등

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6조 ~ 안 제40조)

-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구정질문,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구청장 등의 발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 질서와 경호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1조 ~ 안 제47조)

- 경호, 회의의 질서유지, 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 등

아.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부칙 안 제2조)

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부칙 안 제3조)

차.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72조, 제113조, 제127조, 제134조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조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반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총 47개의 조문과 4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의회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제2항에는 의석배정 방법을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게 비례 대표 순서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제1항 후단에는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조항 중 제3항에는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하며,

제5항에는 의장단 구성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단 선출시기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임기 만료시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일 이내로 그 시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 안 제11조에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하고, 보궐선거 발생 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는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을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 안 제13조에는 임시의장의 선거 조항과 관련하여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는 제2항과 제3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에는 의장 당선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직위의 해직 시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하는 의장의 겸직제한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7조제1항에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8조에는 의회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 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을 매년 12월31일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9조제1항에 정례회 회기는 60일 이내에서 운영하고,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20조에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6월15일에서 6월12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2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서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4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끝으로 안 제47조에는 주민의 알 권리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회와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공개하도록 하였음.

-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였음.

- 부칙 안 제4조에서는 본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그 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규정을 하나의 조례안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 기능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4.>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2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